#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07

발의연월일: 2024. 10. 25.

발 의 자: 강대식·강선영·박준태

고동진・주호영・조지연

김장겸 • 백종헌 • 김예지

성일종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를 감면하고,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도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단계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면) ①・② (생 략)	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③
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	
면한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1
경우에는 <u>2024년 12월 31일</u> 까	<u>2026년 12월 31일</u>
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	2
는 경우에는 <u>2024년 12월 31</u>	<u>2026년 12월 31일</u>
<u>일</u> 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	
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4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	

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	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	우에
는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취득
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	난다.
⑤ (생 략)	

2026년 12월 31일
⑤ (현행과 같음)